

제386회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27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45)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96)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9)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39)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2)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6)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3)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6)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7)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8)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2)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39)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77)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5)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4)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4)
17. 교육정보화기본법안(의안번호 2108419)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7)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8)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3)
2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5)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9)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41)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2)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6)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9)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95)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1)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1)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90)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03)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3)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6)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9)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1)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94)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96)
3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0)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8)
4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9)
4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5)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2)
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82)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07)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0)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9)
4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54)
4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1)
4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9)
50.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190)
5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32)
5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726)
53.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0)
54.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8)
55. 학력향상지원법안(의안번호 2105910)

상정된 안건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5) 3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6) 4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 4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39) 4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2) 4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 4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 4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 4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 4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 4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 4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9) 4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77) 4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5) 4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4) 4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4) 4
17.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 4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7) 4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 4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 4

2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5)	4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	4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	4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	4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	4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9)	4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5)	4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1)	4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1)	4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	4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	4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	4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	4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	4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1)	4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4)	4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6)	4
3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0)	4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8)	4
4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9)	4
4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5)	4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	4
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	4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7)	4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	4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	4
4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	5
4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	5
4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9)	5
50.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	5
5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2)	5
5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	5
53.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	5
54.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	5
55.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	5

(09시33분 개의)

○소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오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안건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안건은 종전과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가급적 함께 심사하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안과 병합심사가 요구되는 등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관련 안건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5)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996)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129)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339)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462)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526)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143)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856)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037)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048)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052)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439)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877)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965)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374)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794)
17.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419)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907)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788)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773)
2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375)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89)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941)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682)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756)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779)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195)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591)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221)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90)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303)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723)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036)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139)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091)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494)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896)
3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680)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478)
4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479)
4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985)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982)
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882)
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907)
4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270)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729)

47.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
4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
4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9)
50. **국립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
5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2)
5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
53.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
54.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
55.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

○**소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5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박찬대 의원, 서동용 의원, 정청래 의원, 윤영덕 의원, 권인숙 의원, 광상도 의원, 정찬민 의원, 조정태 의원,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6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조문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3조의2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학교법인의 정관이 제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 운영상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학교 운영의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53조의4는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립 초등학교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에 관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는 현행 임용의 범위에 강등을 추가하고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61조제2항에 강등을 추가함으로써 국공립 교원의 징계 종류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7페이지 우측 하단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임용의 범위에 강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의 정의에 대한 자구를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66조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오른쪽 하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의사일정 제2항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초·중등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도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무직원의 공개전형 대상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즉 초·중·고등학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 대학과 사립 유치원의 사무직원은 재정결합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1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2항에서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3항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역시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발의안 전체 6개 조항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저희는 발의안 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 발언하실 건가요?

○정경희 위원 지금 사립학교 쪽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사무직원의 고용에 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은 교원하고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그런 전제인데요. 교원하고는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전형에 의해서 채용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주장하는 것 보면 이게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필요하다는 얘데요. 그래서 사립학교재단에서 기존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사립학교 운영의 기본적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재유 자료 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판시문이기기는 합니다만, ‘국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그 규율의 정도는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라는 폭넓은 의미에서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 그 범위에서 입법 형성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게 교원에 대한 국가의 어느 정도의 임면권에 관한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지 직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립학교 사무직원까지 국가에서 공개전형을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학 쪽에서는 지금 과잉입법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합니다.

○서동용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찬대 서동용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서동용 위원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직원 채용 문제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항목들 다툼이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하시고.

그런데 사무직원 채용 문제는 그다음 법안에 또 내용이 많이 중복되어 있어서……

○소위원장 박찬대 서동용 의원 법안도 같이 있으시지요?

○서동용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윤영덕 의원도 마찬가지로 또 확장도 의원안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다른 부분들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사무직원 채용 문제는 뒤에 의안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소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연번 1번 박찬대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직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동용 의원 외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살짝 뒤로 미루고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어떨까요?

정경희 위원님, 어떤가요?

그러면 정경희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반대 의견을 표현했던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살짝 뒤로 미루고 나머지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해서 동의

하는 부분하고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좀 효율적으로 의사가 진행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집중적 논의를 위해서 살짝 뒤로 빼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법안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 박재유 딱히 연관되는 법안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다른 것은 그렇고요?

○전문위원 박재유 예.

○소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1호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논쟁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 도입 등과 관련된 부분은 살짝 뒤로 미루고요.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까요?

○서동용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3페이지 아래에 ‘관련 단체 의견’ 해서 반대 의견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정경희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 표명하셨던 사무직원 공개전형에 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기관에서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만 좀 밝히시면,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 그것만 가지고 토론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서동용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학교 직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론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우리 개정안 원안대로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사립학교 직원과 관련된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른 법안과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으면 다시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호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사일정 제5항, 제10항과 공통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서동용 의원안과 윤영덕 의원안은 공개전형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반면에 광상도 의원안은 임용권자가 공개전형을 단독 또는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임용 방식에 있어서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서동용 의원안 부분 중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개정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용 의원안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영덕 의원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광상도 의원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임용권자가 단독 또는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3건 개정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서동용 의원안과 윤영덕 의원안은 광상도 의원안과 달리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서동용 의원안은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윤영덕 의원안은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개전형이라는 용어 대신 위탁전형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동용 의원안은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윤영덕 의원안과 객상도 의원안은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현행 법령상에 따른 공개전형이라는 용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신규채용 위탁 대상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할지 여부 그리고 공개전형의 위탁을 의무화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정리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교육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께서 각각 발의하신 개별 조항별로 조금 수정하여 수용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동용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는 1차 필기시험에 한해서 위탁하고 2차 시험의 경우는 교육청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등 절차적인 공정성을 좀 강화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윤영덕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위탁 범위를 앞에서 말씀드린 서동용 의원님 안과 같이 1차 필기시험으로 한정하고 또 대상에 있어서도 유치원이 포함되는 부분은 저희가 재정결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이직이 잦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상도 의원님 안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은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에 위탁해서 필기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한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되 지금 말씀 주신 복수의 임용권자가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는 단서조항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金炳旭 위원 사립학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민들한테 크게 알려진 게 웅동학원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여러 가지 이슈 제기하다가

나온 그 사건인데요.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사립학교의 채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때 그때 임의로 경찰이든 우발적으로 밝혀지면 그 법인을 집계하는 수준인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도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통해서 지금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金炳旭 위원 그러면 모든 채용 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물론 개별 시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한 64% 이상 공개전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炳旭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교육부차관 정종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입니다. 64% 조금 넘는 비율입니다.

○金炳旭 위원 64% 위탁을 하고 있다.

대부분 필기시험 과정을 그렇게……

○교육부차관 정종철 그렇지요. 1차 시험을 위주로 하고 2차의 경우는 면접이라든지 정성평가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에서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사학의 일부 자주성이나 자율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金炳旭 위원 그러면 현재는 64% 정도가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을 하고 이후 2차는 대부분 학교법인에서 직접 선발한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金炳旭 위원 그러면 지금 세 의원님 안은 각각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동용 의원님 안처럼 직접 교육청에 위탁하는 시험의 경우는 1차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2차 시험의 경우도 절차적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완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시험에 참여하는 일종의 시험 평가위원들 추천을 일부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아까 드렸습니다.

○金炳旭 위원 그러면 2차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 구성에 관해서 법에 담든 아니면 시행령에 담든 우리가 뭔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저희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사학에 일종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에 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炳旭 위원** 그리고 의무로 하는 것하고 권유로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시험의 경우도 일정 비율 이상은 교육청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을 시행령에 담보하기 위해서는 권고를 넘어서 강행 규정으로 두는 것이 옳겠다……

○**金炳旭 위원** 그러면 1차 필기도 강행이고 2차의 평가위원회 시·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사람을 일부 포함해야 한다, 그렇게 둘 다 강행 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2차 시험 포함해 가지고 권유, 권고할 때 1배수로 권고하지는 않으실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세부 시행 방안의 경우는 하위법령 등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시도마다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위탁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법에 두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배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나요?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채흥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차 시험에서 5배수 이상을 해 가지고 사립학교에 2차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5배수 이상으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원을 뽑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상위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자격자라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미달하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속아내는 정도의 역할이겠네요 2배수, 3배수가 아니라 5배수라고 하면.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경희 위원** 지금 논의되는 세 가지 법안의 차이점을 보면요 공개전형은 한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동용 의원안, 윤영덕 의원안, 광상

도 의원안 다, 윤영덕 의원안에는 공개전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개전형을 한다는 데는 누구든지 동의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공개전형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3개의 안이. 그래서 교육감에게 위탁해서 할 거냐, 아니면 임용권자가 하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교육감한테 위탁하는 것이 걸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정할 것 같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 보셔서 다들 아시겠습니까만 조희연 교육감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채용한다고 실제로 공개전형 형태를 취해 가지고 채용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랬는데 그 채용위원회 구성하는 데서부터 특정한 인물을, 자기 교육감 선거를 도와줬던 해직 교사 5명을 미리 찍어 놓고 그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채용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채용에 지원한 교사 중에 이 5명을 뽑으라고 알려 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17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은 원래 조희연 교육감이 찍어 두었던 다섯 사람이 선발된 거예요. 그게 2018년 12월입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 날 임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형식적으로는 공개채용이라는 형식을 취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공개채용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감한테 맡긴다고 해서, 위탁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공정한 경쟁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 측면에서 공개전형을 임용권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는데 형식은 공개채용으로 하되 여기 서동용 의원님 안처럼 원칙적으로 필기시험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채용위원회에서의 어떤 비리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김병욱 위원님.

○**金炳旭 위원**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에 위탁해서 치르는 필기시험과 흔히 교대 졸업생들이 치르는 임용고사, 사범대 졸업생이 치르는 임용고사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난이도가 다르다거나?

○**교육부차관 정종철** 두 시험 간에는 출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절차가 별도로 분명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金炳旭 위원** 과목 수도 다르고 그런 건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다만 앞에서 위원장님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교사로서 기본적인 자질 또 직무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상호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炳旭 위원** 그냥 아주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사립학교 교원 1차 필기시험 치르는 것을 교육청에 위탁해서 공개로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가자 이런 논의를 한다고 하면 임용고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5배수로 추천해서 사립학교에서 면접으로 뽑도록 하면, 오히려 그런 방식은 어떤가요? 굳이 각 지역 교육청이 학교마다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은 비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공정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육부차관 정종철** 아까 배수 부분은 사립학교 위탁의 경우 5배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공립학교의 경우는 5배수만큼은 아니고 1.5배수로 해서 또 2차 수업 시연 등을 거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둘을 병합해서 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채홍준** 담당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동전형이라 해 가지고 공립학교 임용고사 1차 시험볼 때 사립학교도 1차 같이 봐 가지고 응시생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공립으로 둘지 사립으로 둘지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金炳旭 위원** 그러니까 여러 형평성이나 공정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왕에 현재 이미 64%의 학교가 교육청에 위탁해서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자고 했을 때 임용고사를, 임용고사로 표현하는 게 맞나요? 교직원 임용고사를 좀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차라리 더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따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또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

님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은 완벽히 떨칠 수도 없고요.

○**소위원장 박찬대** 교육부에서 따로 답변 없으면 윤영덕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 지금 공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임용 절차는 전국이 다 동일합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방식은 통일적입니다.

○**윤영덕 위원** 다만 임용권자는 시·도교육감이 되는 것이지요? 사립학교는 전국적으로 완전하다 다른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조금 달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 주신 것처럼 적어도 1차의 경우는 교육청에 위탁해서 공개전형으로 하고 5배수 상당에 해당되는 합격자를 임용권자가 2차 시험 후보자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식이 거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덕 위원** 개별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교원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하고 교육감에게 위탁해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영덕 위원** 지금 시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위탁해서 신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1차 필기시험을 공개전형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2차, 3차는 개별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윤영덕 위원** 혹시 그동안 적발된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위탁전형을 실시하는 곳하고 위탁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곳하고 비리 적발 건수에 유의미할 만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저희가 그 상관성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부정, 비리의 발생 소지가 훨씬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 전국적으로 평균 64%인데 그것도 시도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구, 광주 그다음에 또 전남입니다, 여기는 지금 모든 학교 100%가 시·도교육감에 위탁해서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덕 위원** 제일 비율이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경북지역이 한 38% 정도, 이것은 2020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거기가 좀 낮게 파악이 됐습니다.

○**윤영덕 위원** 기왕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공개·위탁 전형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비리가 대체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고,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한 경우에 2, 3차에서 비리가 발생한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그 경우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5배수 안에는 교사로서 기본적인 자질 또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 비리라 하더라도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가 임용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찬민 위원** 약간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서동용 의원안을 보면 유치원 및 대학 제외 또 윤영덕 의원안은 대학 제외 이렇게 짝되어 있는데, 물론 고등학교의 경우에 요즘 정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는 것이 있잖아요. 농업, 공업, 산업, 컴퓨터니 애니메이션이니 디자인이니 이렇게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학교들도 제외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 이유는 이 학교는 최근에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 특히 용인의 경우를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별도의 특수학교를, 고등학교를 만들려는 움직임이고, 안산이나 이런 데도 그런 붐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외하는 데도, 특히 이런 학교들이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배려나 아니면 당초에 부정, 비리 없이 정당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제는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루지 못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장기적으로 향후를 위해서 이런 준비도 서두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달리 이해하신 것 같아서, 김병욱 위원 제안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이렇게 임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면 차라리 사립학교의 경우도 임용고사를 통해서 모두 뽑자, 한 5배 정도를 뽑아서 그중에서 사립학교들이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니었던가요?

○**金炳旭 위원** 한번 여쭙본 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100%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여쭙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곳도 있다고는 하네요.

○**서동용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차관님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인식하고 답변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는 김병욱 위원님이 물어보셨다는 그 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대부분 사학들이 사학의 자율성 이야기를 하면서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문제마저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갈등들이 커져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안대로 필기시험에 한해서 반드시 위탁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차 시험 이후는 각 사립학교별로 하되 교육부가 추천하는 인원을 그 시험 평가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 다만 아까 차관께서는 교육부 추천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또 그것이 한 3분의 1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면접 시험이나 2차 시험의 경우 교육청 추천위원을 4분의 1 이상 포함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장도 의원안은 공개전형을 하되 임용권자가 단독으로 해도 되고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 위탁 해도 되는 세 가지 방안들을 다 제시하셨는데.

비리 사학으로 아주 유명한 이홍하 씨가 설립한 학교가 광양보건대, 한려대학교 이런겁니다. 물론 대학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비리를 아주 강하게 저지르는 그런 사학 설립자가 장악하고 있는 법인들, 학교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네들끼리만 공동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한 학교가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인 간 공동경영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 저는 이 안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은 다 공개전형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하는데 공개전형 하지 않는 데가 있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기본 원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동시에 또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합니다.

1차는 다 필기시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강득구 위원 그러면 필기시험이라는 건 어쨌거나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없습니다.

○강득구 위원 전혀 없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강득구 위원 그러면 1차, 보통 5배수에서 7배수 정도 뽑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공립의 경우는 1.5배수 또 사립에서 위탁하는 경우는 5배수 그렇게 됩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5배수 갖고 사학에서 2차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학에 대한 자율성이라는 부분 속에서 고민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차관께서 생각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치원은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받지 않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을 그 대상에 넣는 것은 이 원칙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결함보조금 이유도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

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교육감한테, 교육청에 1차로 위탁한 사례 중에 예를 들면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현재까지 문제가 있다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강득구 위원 없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민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없었습니다.

○강득구 위원 없었지요. 그러면 사학의 자율성과 시험의 공정성이 적어도 예를 들면 1차 필기시험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팩트로 드러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께서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말씀하셨고 재정 지원을 받았으니까 사립학교 교원 채용하는 것도 공공에서 관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재정 지원의 의미는 교육부에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립학교 등록금을 동결한 것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계속해서 동결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빌리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도 사립학교의 받는 주체가 재단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한 것인데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기본적으로 논의 단계에서 사학이라는 것 자체를 마치, 한두 소수 사학의 비리를 모든 사학에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걸립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시다마는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왔고요. 사학은 나름대로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학이념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학으로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니다.

실제로 시골에 가 보면 굉장히 소규모의 학교들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창립하셨는데 힘들게 그것을 이어 나가고 있다거나 하는 학교가 여럿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몇몇 안 되는 대규모 비리사학 이런 것이 머리에 각인 돼서 그렇지 절대다수의 사학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똑같이 관여해서, 특히 교육청이 관여해서 교사를 선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학은 자체의 건학이념, 예를 들면 미션스쿨이라든가 해서 특정한 종교적 이념에 의해서 설립되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을 교원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 중에서 보면 공개전형을 할 때 임용권자가 단독 또는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든 아니면 교육감에게 위탁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예를 들었지만 위탁한다고 해서 공정하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에게 이것을 위탁할 경우에 특정한 단체의 사람들이 새로운 교사로 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원 선발을 교육감에게 모조리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김병욱 위원님.

○金炳旭 위원 평가위원을 몇 명으로, 전체 인원이 보통 몇 명인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지금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채용 예정 과목이 달라질 때마다 숫자가는…… 한 과목을 예로 들 때 보통 세 분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체조 채점 방식으로 할 경우는 7명 이렇게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金炳旭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 특별한 종교를 표방한 학교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교사를 뽑을 때는 조금 달리 줄 수도 있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논의하신 것처럼 1차 필기시험 그 부분은 교과 내용하고 교과 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학력과

지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金炳旭 위원 그런데 5명 중에 그 사립학교에서 지향하는 종교와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교사 자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1차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나 헌법상 종교를 이유로.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 부분은 제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金炳旭 위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예외를 둘 수도 있어야겠네요.

이것을 다 의무적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 학교에서 어떤 종교적인 역할도, 기능도 해야 하는 교사를 뽑는다고 하면……

○교육부차관 정종철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앞에서 특히 박상도 의원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 저희 의견 말씀드릴 때 단서조항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통합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부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소위 위탁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金炳旭 위원 그런 안은 지금 서동용 의원님이나 윤영덕 의원님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金炳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해야겠네요, 하게 되면?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金炳旭 위원 단서조항으로 넣는다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사립학교에서 꼭 원하는 교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길은 또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원 선발 과정에서 사립이든 공립이 되었던 공정성이나 합법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의심받는 학교가 지속 가능할까 좀 의심스럽고요.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는 과정에서도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가 나타나기도 했고 또 채용뿐만 아니라 진급 과정에서도 사실 공공연하게 들리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립학교가 어떻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사립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교직원회, 사무직원과는 좀 달리 판단해야 되겠지만 교사 자원들은 공립학교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선발되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을 사립학교측으로부터 잘 좀 확인해서 그런 것까지 다 원천적으로 막지는 말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 법안을 잘 성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한번……

○소위원장 박찬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강득구 위원 제가 한번……

○소위원장 박찬대 아니요. 일단 정찬민 위원님 먼저 손드셨기 때문에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주 다른 의견이 아니면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민 위원 차관님, 중고등학교가 같은 재단인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정찬민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이직이라고 그러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 단위에 가면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학교들 역시 괜찮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 모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교 등등도 있고 그래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디테일하게 묶어 놓으면 정말 자율적으로 편리하게 또 효과적으로 교사 채용이라든가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한테 너무 일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개인 의견은 광상도 의원안처럼 전체를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 놓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 의견은 세 번째 광상도 의원안처럼 시·도교육감한테 위탁도 할 수 있고 또 단독 또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채용할 수도 있게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득구 위원 사립학교에 나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인건비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계속 체크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강득구 위원 그 투명성 확보와,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립이라는 특수성과 자율성 부분에서 적어도 1차 필기시험만큼은 투명성을 확보하자, 이게 취지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강득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께서 서울시 교사 특별채용 관련해서 ‘특정인 5명이 사전에 명시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고문을 낼 때도 5명이 아니고 ‘0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관련 과정에서도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7명에서 5명을 뽑았는데 특채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들 7명의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격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자격에 좀 미달됐거나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제 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었던 문용린 전 교육감 때도 특별채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께 묻겠는데요 특별채용이랑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개채용이랑은 또 다른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특별채용의 경우도 원칙은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공개전형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1차 필기라는 게 전제인데 특별채용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그것은 방식을 달리 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공개전형을 기본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마지막은,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심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심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으나 어쨌거나 적어도 5명을 적시하지 않았는데 마치 적시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속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지금 법적 다툼이 있고 사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여야 간에 시각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우리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의신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은…… 한 분씩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계속 논쟁이 이어지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정경희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대신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고발된 거고 그 고발된 내용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바로잡을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특별채용을 문용린 교육감도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특별채용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특별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불법적이었는가를 말씀드린 거지 특별채용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해직 교사들…… 그때 그 사람들이 왜 해직됐느냐 하면 실정법을 위반해서 해직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5명을 특정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겠다고 교육감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밑에 과장, 국장, 부교육감까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채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담당이 못 하겠다고 나섰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한 사람이 나서서 특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특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다섯 사람을 뽑기 위한 거라는 걸 사전에 알려 줬다고 감사원 고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 사실을 다 밝힌 거고요.

감사원이 어떻게 했느냐?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이 수사자료를, 그러니까 감사원이 조사한 문건을 공수처에다가 넘겼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이것 가지고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온 문건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 저도 속기록에 분명히……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찬대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득구 위원 정경희 위원님, ‘특별채용에 대한 부분은 문용린 교육감 때도 있었다.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의회에서 그리고 또 교육단체에서 서울시교육감한테 요청을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해직 교사였던 건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학의 민주화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나쁜 가치 실현을 위해서 교단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공적 가치라는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경희 위원님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셨던 거고요. 가치에 대한 부분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만큼은 객관적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경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사실관계 좀……

○소위원장 박찬대 아니, 이제 그만……

○정경희 위원 아니요, 한 30초면 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아니요, 잠깐만요.

○서동용 위원 그만하시지요, 그만.

○정경희 위원 사실관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찬대 정경희 위원님!

제가 진행하는 방법을 조금 따라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논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정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관계와 그릇된 게 있으니까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아니,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이분들이 무슨 민주화운동을 해서 해직……

○소위원장 박찬대 정경희 위원님,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제 말이 떨어지기 전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법안소위를 진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학의 자율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도를 만든다 해 가지고 사학의 비리를 다 막을 수도 없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두 분이 충분히 소명을 하셨고요.

다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게 사실이나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절차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다, 감사원이 고발을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이미 다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거고요. 대신 그렇게 진행했던 그 깊은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필요하다면 재심의라든가 아니면 소송과 관련되어야 할 이야기고, 지금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기서 말씀을 더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정경희 위원님 또 말씀하시면 또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실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시고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하는 부분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요. 사학 비리 그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완비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탈이라든가 법규 위반을 다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만약에 그렇다 그래서 제도화나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 의견들이 다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서 그 가운데점을 모아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원장으로서는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지금 서동용 의원님하고 윤영덕 의원님하고

곽상도 의원님 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3개를 좀 조합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좀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 의견을 존중해서 제의를 하고 그리고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부분을 언급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조문을 11항에 언급해서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되고,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거기에 곽상도 의원안을 반영해서요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 이 조건들을 서로 다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사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다 막기 위해서 법이 촘촘하게 모든 것을 만들 수는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특별한 승인 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많이 소진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특별한 주의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학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부분을 그냥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 세 가지 법안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승인을 해 주지 않을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소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사학의 자율성도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또 정찬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특성화학교에서 요구되고 있는 특별한 직능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뽑기 위해서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또 김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건학이념에 맞는 특별한 교사를 뽑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다 반영이 돼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의 승인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은 세 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 논의했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제가 새롭게 제안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걸로 진행을 하

겠습니다.

일단 정경희 위원님하고 강득구 위원님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 주시고요, 윤영덕 위원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영덕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싶은데요.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수업료는 국가 재정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전적으로 다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2개년 연속해서 예산을 조금씩 올리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부분이 수업료 전부를 다 감당하기에는, 지금 한 반 정도도 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덕 위원**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측면이 있는데, 확장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단독 또는 공동 전형 방법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전형 방법이 다양하더라도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해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2차·3차 전형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영덕 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1·2·3차가 아마 있을 텐데 1차 전형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안으로 간다 하더라도 2차, 3차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신들의 어떤 건학이념을 실현하거나 또는 신규 교원 채용의 어떤 취지에 맞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위원장님이 잠깐 정리해 주신 대로 아예 1차 시험 조차도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앞에서 김병욱 위원님 지적 주신 특히 미션스쿨의 특수성 또는 사학의 특수성이나 자율성 부분을 담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윤영덕 위원** 저는 실은 2차, 3차에서도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3차까지 모든 전형 절차를 국공립 수준에 준해서 진행하는 것이 사학 자체로 본다면 국민들의 그런 불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어떤 제도적인 근거가 될 것이고 또 스스로 그런 부정과 비리의 유혹으로부터 벗

어날 수 있는 일종의 예방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정과 비리의 유혹이 사학들에 상당히 강하게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감사원에서 사립학교 교원·직원 채용 비리 의혹 관련해서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요. 여기에 보면 2차, 3차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수업 실연에 평가는 당초 계획된 평가위원이 아닌 교감이 단독으로 평가해서 이사장의 처조카인 응시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거나 면접시험은 이사장의 딸인 행정실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사촌동생인 응시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해서 결국 정규 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 공고문에는 1차 시험으로 필기, 논술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자의적으로 변경을 해서 서면심사에서 교장 딸에게 최고 점수를 쥐 가지고 채용한 사례 그리고 원래 점수대로라면 불합격인 특정 응시자의 필기시험 주관식 문제에 대해 채점 기준과는 달리 부분 점수를 쥐 가지고 최종 합격시킨 이런 사례들,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차를 이렇게 위탁하더라도 2차, 3차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에 준해서 이렇게 전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유혹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오히려 사학이 스스로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위탁하는 것을 제 발의 안에 담았지만 또 여러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가 된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사학의 공공적 책무성을 강화하면서도 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러한 교사 채용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는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개정 법안들의 합의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사립학교의 불공정한 채용 때문에 쭉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바꾸자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율적인 채용을 통해서 문제없이 진행돼 왔다면 이런 논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현재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우리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이사장의 며느리, 딸, 조카 이렇게 교사로 채용해 왔던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공개채용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실력이 낮은 교사들을 채용하면 그 피해가, 그 학교에 가고 싶어 간 아이들도 있지만 강제 배정된 아이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에 대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채용을 공정하게 하는 것,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안은, 지금 공동전형을 하는 경우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시행령에 나와 있긴 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아니, 추가되는 게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사학의 인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개정안의 논의가 출발이 돼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까 논의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제도를 가지고서 다 틀어막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특성화학교라든가 또는 건학이념이 남다른 학교들도 만족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둘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학의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우에는 필기시험도 반드시 봐야 되는데 만약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재단 또는 특별한 이사장, 사학 비리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될 곳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승인 여부를 부여함으로써 인해서 일단의 건전하고 모범이 되고 있는 건학이념을 지키고자 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사학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건학이념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양쪽의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윤영덕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귀중한데요, 윤영덕 위원님 말씀이나 서동용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면 지금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합의를 이루어 내기 어려우니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다만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승인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승인을 안 해 줄 때는 그것에 대한 각별한,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저항이라든가 이의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서로 균형 잡으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면서 사학과 관련된 결함이라든가 우려가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꼭 제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서로 중도적인 입장을 정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윤영덕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악용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공동전형을 예외로 두면 사립학교들끼리 짬짜미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형 방식은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결국 교육감에게 신청…… 신규 교원 채용은 사립학교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신규로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교육청에 신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해서?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채홍준 교원양성연수과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립학교법상 임용의 주체는 학교법인 혹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고 사후적으로 며칠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로 위탁전형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평균이 64%가 넘어섰다고 하니까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교원 채용을 하게 되면 재정결함보조금을 예측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경우 20년 결산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 사립학교 재정 규모가 한 12조 3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돈이 한 8조 9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은 예산의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각각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사를 채용하기 전에도 이미 전년도에 협의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고요. 통상 아시는 것처럼 중·고등학교는 기본 교과가 구성돼 있고 물론 최근에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일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정규 교원을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사 증원이 따로 있지 않더라도 그런 재정결함보조금과 연동된 연 단위 협의는 거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최송합니다.

아까 사전 협의 말씀하셨는데 인건비하고 연동되니까 당연히 교육청하고 채용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윤영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립학교가 단독으로 신규 교원을 채용하든 아니면 공동으로 채용하든 간에 채용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금도 교육감하고 사전 협의해서, 그것이 승인 사항은 아닐 거예요. 아마 협의해서 전형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런 협의 절차가 있고.

또 재정결함보조금도, 아까 통계가 작년 이전 통계일 것 같은데 올해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교육 실시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윤영덕 위원** 그러면 사실 국가재정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인건비의 거의 대부분을 국가재정으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1차 관문인 필기시험 정도는 국공립에 준하게 설계되어야 사립학교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5배수라고 그랬으니까 2·3차에서 임용권자가 얼마든지 그 5배수 중에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또 자기 학교에 맞는 그런 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저는 사학의 자율성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윤영덕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야당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 참고적으로 여쭙고요.

차관님, 신규 채용자들은 임용고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학 때 교직 이수한 그런 사람들 두 부류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기본적으로는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사로 임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민 위원**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약 64% 조금 넘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 위탁해서 1차 시험을……

○**정찬민 위원** 그게 아니고 교원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 4년제 대학에서 학위 취득하고 교직 이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정찬민 위원** 그 사람들이 대상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기본적으로는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되지요.

○**정찬민 위원** 그렇지요. 아마 30%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대라든가 이런 대학 나와서 임용고시를 패스한……

○**교육부차관 정종철** 지금 말씀에는 자격하고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임용되는 것하고 2개가 혼재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임용고시를 보든 안 그러면 사립학교가 단독으로 채용하든 교사자격이 있거나 거기에 준하는 자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찬민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신규 채용자는 어느 자예요? 후자예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찬민 위원** 오케이.

○**윤영덕 위원** 차관님,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이 여쭙보신 것은 이것 같아요. 지금 사립학교 교원은 굳이 임용고시를 보지 않아도 교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는 경우는…… 교원 임용시험은 기본적으로 공립학교인데요.

○**윤영덕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학교는 임용고시

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립의 경우에는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교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지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요.

일단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 정경희 위원님은 객상도 의원안처럼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교육감을 통해서 하든 자율성을 부과해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당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원칙이라는 것에 예외사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공개전형으로 뽑되 1차에 필기시험은 반드시 집어넣는 걸로 하게 되면 2차, 3차에 있어 가지고 5배수 범위 내에서 건학이념과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일부 사립 이해관계자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그 5배수 안에서도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행해야 될 건지 아니면 승인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예외를 적용할 건지 하는 그 부분만 남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논의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경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찬대** 예,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제가 지금 논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논의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객상도 의원안이 제시한 거기서 나온 게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용권자가 단독으로 하든가 공동으로 실시하든가 아니면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사학으로 하여금 약간의 자율성을 부여한 건데요. 이 안에다가, 공개전형 부분에다가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지요. 서동용 의원님 안의 ‘공개전형 시 원칙적으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단서조항을 객상도 의원님의 공개전형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그런데 이 부분은 단독으로 하거나 공동으로 하거나 위탁해서 하거나 다 각각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단독으로 전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논점을 좁히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경희 위원** 아니요, 단독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집어넣는 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지요.

○**서동용 위원** 단독으로 하게 하면 사실 현행보다도 더 후퇴할 가능성들이 커지고요. 필기시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교 내부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담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지금 논점은 그것인 것 같아요. 이것을 공개전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공개전형으로 하되 교육청의 권한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공개전형으로 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기되고 있는 사학 비리와 관련된 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점이다 보니까……

말씀하세요.

○**정경희 위원** 지금 논의가 자꾸 돌고 도는데요. 지금 이 3개의 법안에서 우리의 논점이 뭐냐 하면 사학재단에 있는 채용 권한을 교육감으로 옮기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제가 사학재단이라는 게 범법을 저지를, 소수의 사학재단이기는 하지만 범법을 저질러 왔고 앞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교육감한테 넘기자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니에요. 교육감이라고 그래서 공정하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조희연 교육감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였고요 거의 유사한 사례가 인천에서도 부산에서도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안은 사학재단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과잉입법이에요. 원래 어떤 비리가 나타났을 때 사후에 발견되면 그것을 처벌하면 되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사학재단을 범법자로 전제하고 법을 만든다? 이게 일종의 과잉입법인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교육감도 범법자로 전제하고 법을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사학재단에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교육청에다 갖다 준

다? 그렇다고 해서 공정한 채용이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논점을 좀 좁히기 위해서 의견수렴 기회를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하신 말씀은 논점을 좁히는 게 아니라 최초의 스탠스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논점을 좀 좁힐 수 있는 방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정경희 위원님의 발언은 논점을 양보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하고 방향은 조금 다르신 것 같고 그냥 원의견을 고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 위원 공개전형 그다음에 사학법인의 교원 채용 절차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이 이것은 권한의 위탁이 아닌 것 같아요. 임용권은 여전히 사학이 갖고 있는 거지요. 다만 그 임용의 절차를, 그것도 절차의 일부를……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의견을 좁혀 가고 있는 것은 제가 낸 안은 임용 절차 전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이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으시니 최소한 1차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필기시험만큼은 시·도교육감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임용권의 위탁이 아니라 임용 절차의 일부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좀 좁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법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범법행위는 어느 곳에서든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시·도교육감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견 접근을 보면서 가능하다면 채용 절차 중에 1차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을 한번 좁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강득구 위원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강득구 위원 차관게 묻겠습니다.

지금 사학재단 교사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재단을 범법자로 전제해서 이 법안에 대한 고민을 했나요? 지금 정경희 위원님이 이 법안을 만든, 개

정안을 만든 이유가 사학재단을 범법자로 전제하고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 법안을 만드셨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제가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만 최근에 공정의 가치, 특히 우리 젊은 층에 있어서 공정의 가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반드시 실현해 내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각각 발의된 법안 검토할 때 어느 방향이 공정의 가치에 더 부합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저도 사립 중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저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사립 중고등학교가 한 30%, 40% 정도 될 겁니다. 어쨌거나 공립 중고등학교가 없을 때 사립재단을 설립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 존경합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사학에 대한 자율성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하면 담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윤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고등학생까지 다 무상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필기시험을 봤는데 그 결과 적어도 현재까지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2차, 3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에서 2차, 3차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치, 예를 들면 이 법안을 발의한 분들이 사학재단을 범법자로 전제하고 그랬다는 인식에는 도저히 동의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립 중고등학교 나왔고요, 재단이나 사학 하는 분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경희 위원 제가……

○소위원장 박찬대 아니, 논의를 좀 좁히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래 입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합의에 이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강득구 위원님께서 저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아니, 그런데 지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법안소위를 한 달에 한 열흘 이상 하고 시간도 하루종일 해서 법 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일을 많이 하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토론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30일 중에 이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정요건 3일도 우리가 못 채우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합의를 했지만. 그것도 하루에 2시간 아니면 2시간 반 정도밖에 못 하는데. 사실 마음껏 토론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재정도 쓸 데는 많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분명히 존중하는데 효율적으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논점을 좁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양측 간에 합의를 위한 입장이 한 치도 조율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법안소위 위원 전체가 합의에 이르러야 의결하는 지금까지 운영의 관례를 생각했을 때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심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린다면 전에는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비공개로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공개전형으로 지금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비공개로 뽑는 것보다는 공개로 뽑는 게 좀 더 공정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다 그래 가지고 모든 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개정법안은 공개로 뽑되 사학에만 그대로 맡겨 놓지 않고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급 관할청인 교육청이 좀 더 개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가는 게 공정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 가 거기에 대한 논의거든요.

지금 비공개냐 공개냐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어 가지고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전형으로 뽑되 좀 더 공정하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다 이

렇게 생각을 해서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상태로 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토론에만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윤영덕 위원 위원장님, 의견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논의를 종결하는 것보다는 저도 법안을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양보안을 일단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양보안을요?

○윤영덕 위원 예.

○소위원장 박찬대 저는 지금 좁혀지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윤영덕 위원님, 일단 논쟁이 아닌 서로 좁히기 위한 제안으로 제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 지금 저희들 한 시간 넘게 심사하고 있는데요.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사학이 갖고 있는 고유한 건학이념 같은 게 있고 또 사학의 자율성도 보장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면에서 소위 인사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교원 채용에 대한 우려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강한 안을 제기한 한 사람으로서 우선 서로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사학의 인사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되 객관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소위 필기시험 부분만 위탁 범위로 제한하고 그리고 위탁배제 기준 같은 경우에—예외 기준이지요, 예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그런 방식이나 아까 소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예외 조항으로 서로 의견 접근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사항은 신중하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요.

아까 예외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윤영덕 위원님이 내신 건가요 아니면 서동용 위원님이 내셨던 건가요?

○윤영덕 위원 제가.

○소위원장 박찬대 윤영덕 위원님이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양보하는 안으로 지금 의견을 제시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찬민 위원님…… 동의하신다는 표현이신가요?

○정찬민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차관님, 여기 광상도 의원안에 보면 단독 또 공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 정확한 의미가 됩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단독이라고 하면 사학법인 단독으로 실시한다는 것이고요.

○정찬민 위원 한 학교만 한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그러니까 한 학교일 수도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중에 혹시 중고등학교를 같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찬민 위원 여기 광상도 의원안에서 가리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됩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여기 임용권자라고 했기 때문에 임용권자는 아시는 것처럼 사학법인의 이사장이 최종 임용권자입니다.

○정찬민 위원 또는?

○교육부차관 정종철 또는 공동의 경우는 복수의 법인이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찬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사실 광상도 의원님 안은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개전형의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한 조문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의 방향하고는 서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2개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던 거고요. 윤영덕 의원은 본 위원장이 제시했던 절충안과 또 다른 절충안을 하나 내놓으신 거지요.

○정찬민 위원 죄송합니다.

차관님,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기 광상도 의원안에 ‘임용권자가 단독 또는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근 학교하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 됩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그러니까 인근 학교가 다른 법인 소속인 경우는 인근 학교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대표적인 예로 서울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북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찬민 위원 이해가 좀 안 가 가지고.

광상도 의원하고 직접 말씀을 한번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윤영덕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은 아직 없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정찬민 위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부, 이 정도 하면 되겠지요? 추가적인 의견 따로 없으시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다음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개정안 조문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관할청의 사립학교 임원 취소 사유에……

○서동용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찬대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아까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1항하고 그 뒤에……

○소위원장 박찬대 서동용 위원님, 아까 보류했던 직원 건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동용 위원 직원 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넘어가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찬대 저하고 서동용 의원 외에 직원과 관련된 게 또 있나요?

○전문위원 박재유 징계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징계까지 같이……

○전문위원 박재유 채용과 징계 두 가지……

○소위원장 박찬대 채용과 징계라는 측면에서 직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해서 세 안건을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재유 그러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관할청의 사립학교 임원 취소 사

유에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규정은 있으나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규정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추후에 다룰 예정인 의사일정 제6항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 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교직원에 대한 징계에 불응하는 경우 임원의 승인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는데요. 교육부 의견까지 듣고서 말씀해야 되겠네요.

교육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정종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같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요건 중에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라고 했는데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이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6항 안건인 권인숙 의원안하고 같이 심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6항 할 때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항 권인숙 의원안 할 때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의원안은 권인숙 의원안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4항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의안번호 4339번입니다.

2쪽, 안 31조에서 교육부장관의 외부감사인 지정 및 감사인 선임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4년 동안은 학교법인이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연속하는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고 지정된 외부감사인의 선임 제한에 대한 규정과 외부감사인 지정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제4항은 교육부장관의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고.

3쪽, 안 제31조제5항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 선임 제한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연속해서 두 번 같은 감사인을 하지 말고 각각 다른 감사인을 지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안 제31조제6항은 교육부장관의 외부감사인 지정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안 제31조의2는 외부회계감사 감리업무 위탁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감사증명서를 외부감사보고서로 자구 변경을 하고 있는데 안 제31조제4항 후단에서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외부감사보고서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 자구 정리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단 신설이 중요합니다.

후단에 보시면 외부회계감사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한정하여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조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한정하여 위탁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이 법은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교육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

중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이 회계감사 법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지금 발의하신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미 영리법인은 2018년에 또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주기적인 지정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지정제 도입의 시기라든지 구체적인 방식은 위원님들 논의 결과를 존중해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지정감사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부분은 논의하실 때 두 가지 점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하고 또 법에 직접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상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두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안을 제안한 제 입장에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주신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검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특정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법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니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되 법에다가 특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까지는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사학의 많은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학의 자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공정성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에 있어서 일부 사학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건학이념이 충분히 존중받기 위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 같아요.

회계의 불투명성이 사학의 자율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사학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만큼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안했던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되면 인원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렇고 더 확보되어야 되지요? 아예 고정화·지정화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외부인을 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찬대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법인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는 감사인이라고 표현하는 공인회계사 법인이나 감사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인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있다 보니까—자유수임제라고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자유수임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자유수임제의 결과로 회계 투명성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영리법인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유수임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6년 동안 자유수임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있는 3년간은 지정을 통해서만 결국은 감사인과 감사인 계약을 하고 있는 피감사 대상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성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영리법인은 2018년도부터,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공익법인한테도 이게 사실 적용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리법인·공익법인과 동일하게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구요. 영리법인은 6년 자유수임 하고 3년 지정제를 하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그 기간을 좀 짧게 해서 4년간 자유수임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2년간은 감사인을 지정받아서 사학의 회계 투명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아마 이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는 사학의 자율성이라든가 아니면 건학이념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꾸 비효율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인데 신뢰를 확보할 때까지는 이러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 입장에서 제가 아까 드렸던 그 말씀을 반영해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면 그걸로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앞에서 특정 단체를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부분만큼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는 대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법안 대표발 의자로서 말씀해 주신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떤 기관이든 간에 투명성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일반 기업이야 영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라는 그것에 지금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까지 자율적으로 감리업무를 각 재단이 알아서 해 왔는데 꼭 이렇게 법안으로 만들어서 감리업무를 특정한 단체에다가 위탁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학이 영리법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어떤 감리기관을 지정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교육부가 설명할까요, 아니면 제가……

○**교육부차관 정종철** 지금 말씀 주신 감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간에는 사학진흥재단에서 외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금 제안하신 법안에는 4년은 자율적으로 하고 2년은 교육부가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간에 자율적으로 해 왔을 때

최근 3년간 감리한 것에서 보면, 즉 대학이 자율적으로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회계감사를 했을 때 나타난 부적정 사례들이 2018년에 280건, 19년에 324건, 20년에 438건 해서 최근 3년간 약 1000건이 넘습니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4년 주기 또는 그 이후 2년은 교육부가 지정하는 회계감사 전문기관, 특히 사학법인의 특수성을 일부 감안한 회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일종의 감사를 받도록, 거기에서 감리를 받도록 하는 이런 장치들은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 주신 회계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높이는 데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지금 우리나라 법상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 제도는 공인회계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감사 자체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각 학교법인에 내부감사가 있고요 그것은 내부다 보니까 외부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감사인으로 유일한 자격증이 공인회계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요.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 의견 주세요.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 송선진입니다.

제가 여기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실무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위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영리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체계를 보시면 제11조 1항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체가 각 호의 사유에 따르는 회사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직권지정 조항이 있고, 뒷장에 보시면 2항에서 6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을 정하면 3년간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 조항이 상호보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모든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 예외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학법인 쪽 입장에서는 감사인 선임 비용 같은 것이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나 이런 데서는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안드리자면 외감법에 따른 1항과 2항의 이 구조를 종합해서 적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주기적 지정제도도 하면서 또 비리

의혹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감사인 선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실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직권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감사인을 선임하되 임의로 선임하고 감사 제도의 주기적 지정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주기적 지정이라고 하는 특정한 의혹이라든가 별도로 관리되는 곳을 특정하지 않고 4년마다 2년씩 지정하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포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요.

지금 교육부 의견은 뭐냐 하면 그것 외에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개정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추가적으로 넣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기적 지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새로 다시 개정법안을 내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교육부에서 직권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 송선진 지금 현재 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란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그렇지요.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 송선진 저희가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사례를 들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회의장에서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보완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그 수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대령에서 군을 나누어 가지고 우선해야 될 사립학교법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추진하면 실무적으로 훨씬 추진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주기적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말씀하는 것이지요?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 송선진 예, 범위와

절차 등……

○소위원장 박찬대 그게 학교법인 입장에서 부담이 적겠지요?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장 송선진 예.

○소위원장 박찬대 왜냐하면 직권지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규정 입법화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규모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지금 제가 알아들은 뜻은 그런 것이 아닌데, 주기적인 것 플러스 몇몇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학교는 지정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정경희 위원 어떤 뜻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약간 다른데요.

○소위원장 박찬대 그것은 아니고요. 직권지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왔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집어넣지 말고 직권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법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을 논의해서 집어넣는 것을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주기적 지정과 관련된 부분만 반영하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직권지정과 관련된 것을 집어넣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니까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행령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아닙니다.

○정경희 위원 직권지정으로 시행령에 집어넣을 경우에 교육부의 권한이 지금 법안 내용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방금 위원장님 정리하신 대로 이 부분은 후속 법안 발의 등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경희 위원 제가 지금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일반 주식회사

것을 가져와서 마치 평면적으로 거기에 대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것인데 사학은 영리법인이 아니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인데 주식회사를 가져다가 거기에 적용되는 감사업무에 평면적으로 대입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정말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직권지정 부분을 시행령에 그런 식으로 법안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정된 법안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정경희 위원님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시행령에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절차라든가 내용을 개선하기로 진행을 했으니까 정경희 위원님 적절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지적된 내용하고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하여 지금 교육부에서 주기적 지정을 받아들이되 시행령에 학교의 범위를 위임해서 정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하고 공인회계사를 특정해서 하는 부분을 시행령으로 빼주겠다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위당 부분과 관련하여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위당이 되면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공람을 해서 확인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단서조항을 아예 다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가는 조항을 그냥 두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물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그렇지 않아도 아까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정경희 위원님께서 ‘감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취지상으로는 감사를 언급하는 내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인 지정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감리는 좀 다르거든요. 감리는 뭐냐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잘됐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리는 구별해야 되는데 아까 정경희 위원님께서 감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문맥상 감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위원장님,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위원장 박찬대 그리고 속기사님들, 아까 정경희 위원님께서 감리라고 표현했던 것은 감사로 수정해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관님 말씀하세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앞부분은 어쨌든 문구 정리할 때 저희 의견을 충실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부분은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 입장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충실히 전달해서 조문 정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점검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감사인 지정을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언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나왔던 감리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인 지정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도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만약에 감사인 지정을 영으로 위임한다고 하면 감리를 하는 대상인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법에 나오면 안 되고 영으로 들어가야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같이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아무튼 정경희 위원님이 그것 잘 지적해 주셔서 가지고 문맥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고요.

수석님, 그러면 이렇게 논의되면……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그래서 이것 위당을 해서 지난번처럼 불편드리지 않게 위원장님하고 위

원님들께 한번 회람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위당은 저희가 교육부랑 같이 작업할까요, 아니면 내일 또……

○소위원장 박찬대 지금 논점들을 분명하게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르게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분명하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면 주기적 감사를 도입하되 시행령에서 모든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4쪽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 되겠고, 5쪽 후단 부분은 완전히 다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그렇습니다.

혹시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게……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그러면 그렇게 위당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팬찮으신가요?

○정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한국공인회계사회라는 게 시행령에서 명시이 되나요? 그 단어가 들어갑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현재 4쪽 보시면 ‘교육부장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찬대 감리업무도.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든지 해서 시행령으로 완전히 위임하는 거지요.

○정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논의상 순서가 뒤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인회계사의 공식적인 단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소위원장 박찬대 예, 딱 하나만 있습니다. 법정 단체로 딱 하나만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그렇게 조문 정리되면 회람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자료 3페이지 개정안 조문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66조의2에서 관할청이 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행법에서는 징계의결을 했던 해당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미온적인 징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8페이지는 앞에서 살펴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국공립 교원의 징계 재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징계위원회와 위원의 숫자 및 구성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임용 및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의결 재심의를 관한 개정안 역시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단순한 자구 수정 차원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의 전제가 되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소속의 사무직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관할청 소속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오른쪽 비고란 중간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은 제70조의4제1항에서 학교 소속 사무직원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무직원을 법인 소속으로 인사 이동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회피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법인 소속 사무직원도 적용 대상이 된다

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며, 관할청이 사립학교 및 법인에 대해서 조사·검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하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제48조도 개정안 제70조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1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의 반대 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와 사립 초중고등학교 소속의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교육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정종철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신 대로 각각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 소속만이 아니라 법인 소속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논의했던 정청래 의원님 안하고 권인숙 의원님 안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래서 정청래 의원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권인숙 의원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같이 심의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심사하셨던 것은, 현행법은 관할청의 사립학교 임원 취소 사유에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 개정안에서는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문상 교직원이 추가되는데,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한 근거 규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있지만 직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안이 충실히 실효성 있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방금 살펴본 권인숙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70조의4 조항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위원님들, 그러면 권인숙 의원님 안에 대한 토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청래 의원님 안까지 같이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金炳旭 위원 차관님께서 이 법 개정의 시급성·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이렇게 고쳐지지 않았을 때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관할청, 해당 교육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했을 때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교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청래 의원안이 있는데, 어떤 징계 요구에 어느 정도 불응하고 있다든지,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지금 학교 실태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불응이라든지 감경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 요구 건 중에 각각 어떻게 불응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 징계 요구 건 관련해서 16년부터 19년까지 저희가 요구한 건의 약 45.6%를 불응하거나 감경하는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징계 요구한 건—14년부터 19년으로 5개년 정도인데—이것도 한 42.6% 정도는 감경하거나 불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다른 안건 논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미 금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립학교는 세금 재원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보고, 여기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사무직원의 경우도 인건비 등을 대부분 세금 재원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교원 또는 국공립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과 사립학교 교원 또는 직원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운영덕 위원님.

○윤영덕 위원 차관님, 지금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하면 교육청에 위탁해서 뽑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윤영덕 위원 사학법인이 자체적으로 뽑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자체적으로 선발합니다.

○윤영덕 위원 징계 요구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감사나 조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징계 요청을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다 징계 요구를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각각, 저도 부교육감으로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특정 사학법인 소속 행정실장 등 직원에 대해서 회계 질서 문란을 이유로 중징계 양정이 내려졌습니다마는 감경해서 경징계로 처리하거나 아예 불문 처리하는 이런 일을 제가 직접 경험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건비도 지원받고 있고 연금 혜택도 세금 재원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특히 직원 부분을 구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윤영덕 위원 그러니까 감경이나 불이행 다 합쳐서 45% 정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55%는 잘 이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윤영덕 위원 우리의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실하게 이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들이 사학 전체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 부분이 사학법인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징계 요구를 이행하는 사학법인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불편함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계속 지적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그 필요성들이 강조되고 주장되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더 이상 학교가 비위자들 범죄자들이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아 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정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찬대 예,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누구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법인 이사장입니다.

○정경희 위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징계권은 임용권자가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도 재단 이사장이 임용권자이면서 동시에 징계권자인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그렇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런데 그 징계권을 재단 이사장이 아닌 다른 쪽으로 옮겨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안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는 사학법인에 두되 재심의하는 기능만 관할청으로 옮기는……

○정경희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심의하는 기능 이런 것도 다 사립학교 재단에 있었던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1차 심의, 제가 좀 전에 재심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심의 기능까지도 사학법인에 있었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런데 이 법안에 따르면 1차는 사학법인에서 하고 2차 징계는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 심의는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관할 교육청이 한다는 겁니다.

○정경희 위원 관할청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근거가 뭐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부도 그렇고 직접적인 감독기관인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는 비율이 약 43~4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에서 윤영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지키는 다른 사학법인에도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경희 위원 물론 그렇게 불응하는 재단이 있는 것도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볼 때는……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무직원이지 않습니까? 사무직원은 신분보장이 다른 교원이나 공

무원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분보장이 전혀 안 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원이나 공무원처럼 교육청이 강행해서 징계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얘가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용권자와 징계권자가 동일해야 되고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데 의무만 부담 지우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리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과연 입법이라는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의 반박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건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 연금 혜택까지 세금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입법 논의하실 때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법안 논의할 때도 그랬고 아까부터 계속 사립학교가 교육부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니까 따라서 징계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밖에 안 되는데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특히 사립학교의 설립에서부터 설립 이후에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관할청인 교육감한테 법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독권, 특히 감사 기능을 통해서 감독을 할 텐데요, 거기에 따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징계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또 불합리하게 감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이 법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징계권이 사립학교재단에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제약하려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그 부분은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국공립 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양정 기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관들은 50만 원만 수수해도 파면·해임, 배제징계를 받습니다. 연금에 불이익을 받지요. 그런 반면에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제가 부교육감으로 있을 때 행정실장 등의 경우는 공금 유용 내지 횡령에 가까운 그런 죄를 짓고도 저희가 요구한 징계양정에 훨씬 못 미치는 감경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불응에 가까운, 그렇게 해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아까 똑같은 논리의 반복인데요, 그것은 교원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교원이나 공무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교원이나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사무직원은 고용당시부터 교원하고 공무원과 같은 베이스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고용을 할 때는 다른 차원에서 되었는데 징계를 할 때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시고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권 중에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아예 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는 이야기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통해서 범죄행위·비리행위가 드러나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설립자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뒤서 아예 징계도 안 하고 계속 유지하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되게 많이 보는 현상이고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그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계속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마련하자는 거고요.

비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사립학교의 자율성하고 같은 맥락에 놓고 고민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감독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내지 사립학교법인 소속이라면 관리감독의 권한은 거기까지 반드시 미쳐야 한다고 보고요. 그 관리감독의 범위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철저히할 것에 대한 지휘·명령권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득구 위원 차관께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 신분보장이 법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법에 공무원과 똑같은 정년 규정이 있다든지 이런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사실상 공무원에 준해서 정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아니, 사실상이 아니고 정년이 보장되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보장이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양정기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신분보장 문제하고 이 부분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공립 학교 공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징계기준에 대한 부분들?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강득구 위원** 동일 원칙, 같은 기준이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 원칙하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그 기준하에서 징계가 결정되고 그 기준하에서 요구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강득구 위원** 차관께서는 이게 사립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보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한 지도감독 권한에 근거해서 요구되는 그런 징계 사안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상……

○**강득구 위원** 다 객관적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정찬민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정찬민 위원** 차관님, 교육청 등등에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이 죽히한 30~40%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14년부터 19년까지 통계입니다만 약 한 43% 가까이 됩니다.

○**정찬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 잘 안 따른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정찬민 위원** 그런데 사학의 특성도 있고 학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간섭적이에요, 과다하게 하고. 이사장이나 이사진에서도 교육청이나 상급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불만이 많은 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징계 일변도로 가다 보면 인사 운영, 심지어는 징계권까지 간섭하는 이런 게 돼요. 그러면 사학을 통째로 공립화하든지, 정부에서 다 매입해서 일사분란하게 운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사학의 전통이 있고 그 나름대로 미가 있는 건데 너무 간섭을, 심지어 더 깊숙이 개입하다 보면 사학 운영하는 의지나 욕심이나 이런 것을 다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학에 대한 인사권을 통틀어서 말하면 너무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징계심의위원회는, 사학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교 내에 교원징계위원회도 두고 있는데 사사로운 거든 경미한 거든 여기서 다루게 내버려 두어야지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도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요.

하여튼 특히 징계권은 그 나름대로 정밀한 분석을 해서 억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너무 과하게 간섭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운영덕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운영덕 위원** 차관님, 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 반론을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운영덕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통상 징계처분안을 해당 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해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소명 기회도 부여해서 방금 말씀 주신 징계처분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절차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덕 위원** 그런 반론 기회를 가지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징계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행정심판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행정소송으로도……

○**윤영덕 위원**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가능합니다.

○**윤영덕 위원** 직원도 가능한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윤영덕 위원** 징계 요구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과정을 따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정당한 인사권 또는 징계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다른 절차들이 아예 봉쇄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립학교 직원들도 공무원은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되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윤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지금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징계가 가능하고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넣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정경희 위원님 의견 중에는 직원의 신분상 불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 약자인데 동일하게 징계를 적용하는 거냐 하는……

○**정경희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박찬대** 그것 아닌가요?

○**정경희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소위원장 박찬대** 그러니까 학교의 장이나 교원과 구별해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정경희 위원** 그러니까 징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는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도 존재하고요 경찰권·검찰권 해서 사법 장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을 정부가 가져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

립학교재단에서 하는 징계 수위가 마땅치 않을 때 정부가 가져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찬대** 아니, 징계 권고지 직접 징계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심의를 관할청이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니까 징계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재단에서 준 징계 수위를 정부가 가져가서 징계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뭐였나 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교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그래서 징계가 정부에 귀속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분보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립학교재단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교원이나 공무원하고 똑같은 수위로 교육청에 의해서 징계 수위가 조절되는 게 과연 법리상으로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제가 무슨 약자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소위원장 박찬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교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반대 없으세요, 동일한 물이라면?

○**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원하고…… 그것은 지금 이 법안 논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교원이나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는데 사무직원은 신분보장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권리는 하나도 없으면서 의무만 지워서 다른 교원이나 공무원하고 동일선상에서 징계 수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정부가 가져가서 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중대한 범죄를 지었으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 안에서 징계를 다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저는 주리소덕션(jurisdiction)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관할권. 이게 사립학교 재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여태까지 거기에 있던 것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사립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까 정찬민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들 사립학교 권한 다 가져가려면 사립학교 뭐 하러 두고, 다 공립화하라는 얘기지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차이가 하나도 없으려면 모든 학교 다 공립화해야 된다고 정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신 법안도 보세요. 1번부터 16번까지 16개 법안이 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떤 법안입니까? 사학이 언론에 비쳐질 때 또 국민들께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을 저지르는 집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학은 건실하게 인재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사학이 굉장히 어려운데 등록금이 동결된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그 경영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해소하는 법안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규제하고 사학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법안만 열몇 개가 지금 나와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윤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영덕 위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아주 건실하게 운영하는 사학법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학법인 때문에 전체 사학법인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불신을 받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수 사학법인이 징계 요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도 마땅히 성실하게 권고를 이행하면서 건실한 사학 경영을 하고 있는 법인에 비추어 봤을 때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벌칙하고 행정적 벌칙은 다른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행정적 징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본다면 오히려 행정적인 측면에서 위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다수의 사학법인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발의된 법안의 취지가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의견에 대한 해석도 말씀하시는 분과 받아들이는 분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결론 내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항 법안의 경우에도 그다음에 2항 법안의 경우에도 사립학교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의 공정성이나 공개성 그다

음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사립학교 직원의 채용·징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언급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인숙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그 토의 결과에 따라서 1항·2항 법안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합해서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합의에 이르는 실마리는 현재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안소위는 이 정도 진행을 하고, 사립학교와 관련된 16개 법안이 지금 하나도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일 같이 추가적인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조문은 오늘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확정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민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되겠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예, 그럼요.

○정찬민 위원 교육부나 교육청이 올해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 징계 결정인가요, 통보를 한 것 중에서 변동된 것, 예를 들어 징계를 감봉 6개월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3개월로 변했다든가 아니면 도로 원위치로 갔다든가 아니면 사법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든가 변동된 사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의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오늘 법안소위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사람의 위원 자격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교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권을 갖는 것이 사학의 자율성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지 아니면 공정한 사학 운영이라든가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서로 많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집어서 또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학재단의 과도한 징계권, 예를 들어서 정당하지 못한 징계권에 대해 교총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는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구제의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징계를 철

회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한 징계 또는 약한 징계 전체를 다 같이 한번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신분상의 이유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징계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사학재단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장이라든가 또는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한 교원이나 직원에 대한 아주 과도한 징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폭넓게 같이 언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폭넓게 논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반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종철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 득 구	金 炳 旭	박 찬 대	서 동 용
윤 영 덕	정 경 희	정 찬 민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승 재
전 문 위 원	박 재 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 관	정 종 철		
기 획 조 정 실 장	김 문 희		